

주차장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8281호

2004. 2. 9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주차장법이 개정(2003. 7. 29, 법률 제6954호)되어 택지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경형 자동차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을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 설치하도록 함(영 제4조제4항 신설).

나. 종전에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중 다세대주택과 종전에 업무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던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등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함(영 별표 1).

다.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을 종전에는 부설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퍼센트 내지 3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설주차장 총주차대수의 2퍼센트 내지 4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상향조정함(영 별표 1의 비고 제10호).

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주차장법”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본문중 “법”을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등)”을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구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건설사업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권역에서 공공철도를 건설하는 공공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도시개발사업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교부한 심의필증”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제4항(동법 제2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

여 사업자가 통보받은 협의내용”으로 하고, 동항제 1호중 “도시철도의 연장”을 “철도의 연장”으로, “도시철도개설”을 “철도개설”로, “도시철도연장”을 “철도연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노외주차장의 총주차대수의 5퍼센트

를 말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준도시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단독주택·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 “세대별”을 “세대별 또는 호실별”로 하며, 동조제4항제1호 단서중 “집회장 및 관람장과 위락시설용도”를 “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중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의 용도”로 한다.

별표 1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 - 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 × 10)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 × 1) ○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정원/15인) ○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7.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별표 1의 비고 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이 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철도의 역사를 포함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본문중 “부지의 소유권”을

“부지(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지목에 한한다)의 소유권”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5호중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을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6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설치기준(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

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인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별표 1의 비고 제7호 본문중 “소수점이하”를 “1대 미만”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10호 본문중 “장애인전용주차장”을 각각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1퍼센트 내지 3퍼센트”를 “2퍼센트 내지 4퍼센트”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1조의2·제4조·제6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의 비고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신청한 시설물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제6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건교부 인사

2004. 3

〈국장급〉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재영 ▷공공기관지방이전지원단장 이명노

〈과장급〉 ▷공공기관지방이전지원단 이전계획과장 박선호

2004. 2. 20

〈국장급〉 ▷국토지리정보원장 신인기